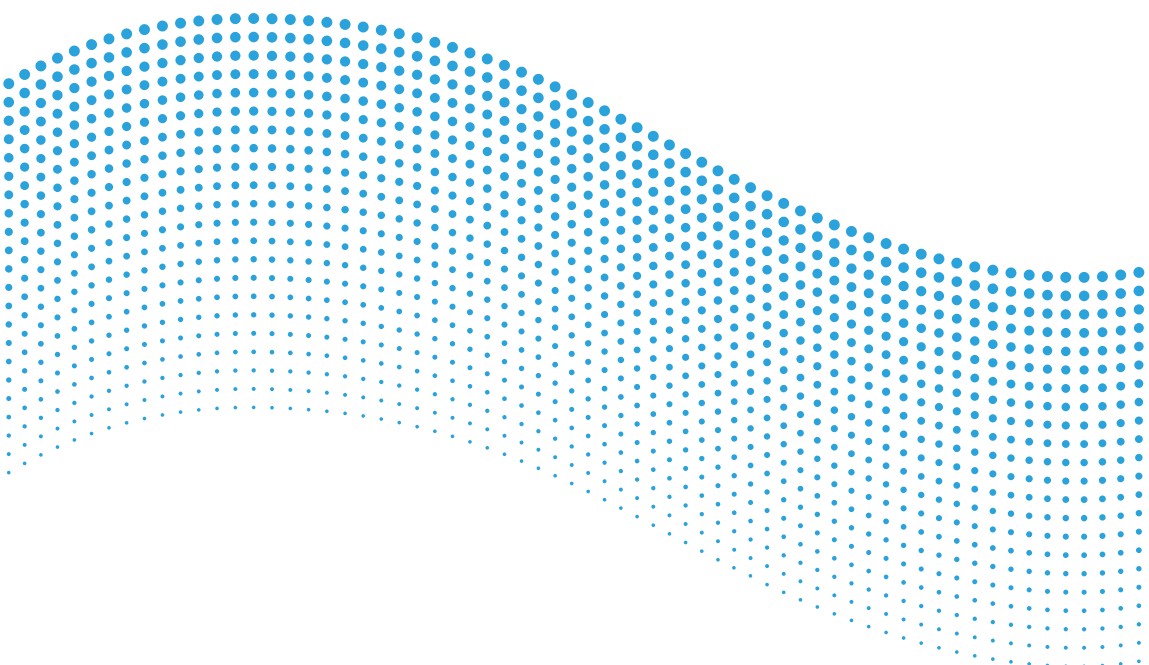


20  
25

외국투자가를 위한  
통관가이드



20  
25

외국투자자를 위한  
통관가이드



## I 현물출자완료 확인

제1장 자본재 도입 흐름도 .....	04
제2장 수입통관 절차 .....	05
제3장 유의사항 .....	06
제4장 현물출자완료 확인 .....	07

## II 수출입통관

제1장 수입통관 .....	08
제2장 수출통관 .....	14
제3장 특송물품 통관 .....	17
제4장 우편물 통관 .....	19
제5장 여행자 휴대품 통관 .....	20
제6장 이사회물 통관 .....	23

## III 출입국 외환신고

제1장 출국시 외환신고 .....	27
제2장 입국시 외환신고 .....	28
제3장 유의사항 .....	29

## IV 관세환급

제1장 관세환급 정의 .....	30
제2장 관세환급 방법 .....	30
제3장 개별환급 절차 .....	32

## V 보세공장 제도

제1장 보세공장 개요 .....	33
제2장 설치·운영의 특허 .....	33
제3장 반출입 절차 등 .....	34

## VI FTA

제1장 FTA 개요 .....	37
제2장 FTA 체결현황 .....	38
제3장 원산지결정기준 .....	42
제4장 원산지증명서 발급 .....	43
제5장 인증수출자 제도 .....	44
제6장 원산지확인서 .....	46
제7장 원산지검증 .....	47

## VIII 관세종합상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	48
전화 상담 .....	48
인터넷 상담 .....	48
방문 상담 .....	48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	48

# I

## 현물출자원료 확인

### 제장 · 자본재 도입 흐름도

#### 외국인투자 신고

- ① 신고기관: KOTRA 또는 외국환은행
  - ② 제출서류: 투자신고서 2부, 외국투자자의 국적증명서, 위임장(대리신고의 경우)
- ※ 조세감면대상 사업: 외국인투자 신고 후 기획재정부에 조세감면 신청

#### 자본재등 도입물품명세 검토·확인 신청

- ① 신청기관: KOTRA 또는 외국환은행
- ② 확인대상: 1)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되는 자본재, 2) 외국투자자가 출자(출연)의 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3) 외국인투자 기업이 외국투자자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이나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 중 자본재
- ③ 신청기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검토·확인 신청
- ④ 제출서류: 신청서 3부, 가격증명서류(예: 물품매도확약서 등)

#### 자본재 수입통관

##### 관세등 면제대상 자본재의 제출서류

- 1. 면제신청서
- 2. 자본재등 도입물품명세 검토·확인서 사본
- 3. 현물출자 또는 현금으로 도입되는 자본재임을 증명하는 서류
- 4. 조세감면대상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세감면결정서)

5. 송품장, 가격신고서, B/L 또는 AWB,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수입요건  
구비서류 등

※ 외국인투자기업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통관

### 현물출자완료 확인신청

- ① 신청기관: KOTRA 관세청 파견관
- ② 구비서류: 신청서 2부, 수입신고필증 사본

※ 대상: 출자목적물로 납입(현물출자)되는 경우

### 회사설립 등기

- ① 신청기관: 지방법원 등기과 또는 등기소
- ② 제출서류: 신청서, 기타서류, 현물출자시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① 신청기관: KOTRA 또는 외국환은행
- ② 제출서류: 등록신청서, 기본서류(법인등기부등본, 외화매입증, 주주명부 등),  
현물출자시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

## 제2장 · 수입통관 절차

### 수입신고

자본재의 수입통관 절차는 일반 수입물품의 통관절차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세관장에게 직접 수입신고를 하거나 관세사가 대행할 수 있음.

#### 수입통관 절차



## 자본재등 도입물품명세 검토·확인

주무부장관(수탁기관장)의 '자본재등 도입물품명세 검토·확인'을 받은 자본재 등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수입 승인서는 필요 없으나, 주무부장관(수탁기관장)이 확인한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신고하여야 함(「외국인투자촉진법」 제29조).

## 제3장 · 유의사항

### 서류제출

관세 등이 면제되는 자본재라도 반드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등 면제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면제받을 수 있음.

### 자본재 도입 전에 사업자 등록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현물출자)로서 관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에 자본재 도입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음.

### 면제금액

수입신고시 제출한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 상에 기재된 '면제신청 자본재 누계액'을 확인하여 '면제신청 한도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관세등 면제기한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5(관세 등의 면제)에 따라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자본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함. 다만, 공장설립승인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년으로 함.

## 제4장 · 현물출자완료 확인

### 출자완료 확인

- ① 출자목적물로 도입되는 자본재(현물출자)는 동 자본재 통관 후 현물출자완료 확인신청서 2부와 수입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여 KOTRA 관세청 파견관에게 현물출자완료 확인을 받아야 함.
- ② 외국투자가가 자본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9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수량·가격 등을 확인한 현물출자완료 확인서를 같은 조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봄. 회사설립 후 자본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 ③ 현물출자완료 확인신청은 자본재가 여러번 분할하여 통관되는 경우에는 동 자본재가 최종적으로 통관된 후에 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현물출자완료 확인신청서와 수입신고필증 사본임.

### 현물출자완료 확인통보

관세청장은 현물출자완료 확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함.

### 자본 등재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국인투자기업은 출자목적물인 자본재의 도입이 완료되면 현물출자완료 확인서를 받아 관할법원에 자본 등재를 하고,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여야 함.

# II

## 수출입통관

### 제장 · 수입통관

#### 정의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 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 수입신고 방법 및 시기

- 신고방법: 관세청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에 자료 전송
- ※ 수입신고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한 각종 신고,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unipass.customs.go.kr>)을 이용하며,  
이용방법은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1544-1285)로 문의
- 신고자: 관세사, 자가통관업체(화주)
- 신고시기: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 통관을 위해 도착 전이라도 신고 가능

####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 ① 기본 제출서류: 수입신고서(전산시스템으로 전송)
  - ② 요구 제출서류: INVOICE, PACKING LIST, B/L, C/O, 검사(검역증) 등
- \* 요구 제출서류는 세관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하도록 요구

##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

- 검사선별: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 검사목적: 수입신고 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 표기, 상표권 위반)
- 검사비용: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 검사방법: 전량검사, 발체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 적발물품처리: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 신고수리

- 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를 수리  
다만, 다음의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통관보류 조치를 할 수 있음.

### 보완요구 사유

- ① 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
- ② 신고서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 ③ P/L 신고를 서류제출신고로 변경하려는 경우

### 통관보류 사유

- ① 「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 ② 「관세법」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 ③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④ 「관세법」 제246조의3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 ⑤ 「국세징수법」 제30조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 ⑥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 ⑦ 「관세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 등의 허위·오인표시물품
- ⑧ 기타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 신고가 수리되면 관세 등 세금을 납부

※ 신용등급이 높은 업체는 세금을 사후에 납부하는 등 혜택 부여

• 세금납부 후 수입신고필증 발행

※ 수입신고필증에는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세관특수청인, 워터마크(관세청 로고), 발행일련번호, 2차원 바코드, 복사본표시마크 등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 물품반출

• 수입신고수리 사실을 확인 후 보세창고에서 물품반출

※ 원자재 등 긴급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물품은 수리전에도 반출 허용신고가 수리되면 관세 등 세금을 납부

---

##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 세관장은 법령이 정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허가, 승인, 표시, 기타 조건 구비 여부를 확인

※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

## 관세율의 종류와 우선순위 검토

• 현행 관세율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종류		내용 및 근거
국정 관세율	기본 관세율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기본세율
	잠정 관세율	기본관세율과는 다른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
	탄력 관세율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계절관세, 조정관세 등 관세법 제51조 내지 제75조(제73조 제외)에 근거
협정 관세율		외국과의 조약이나 행정협정에 의거 결정된 세율

• 관세율의 적용 순위에 유의

순위	적용 관세율	비고
1	덤핑방지(제51조), 상계(제57조), 보복(제63조), 긴급(제65조), 특정국물품긴급(제67조의2), 농림축산물특별긴급(제68조), 조정(제69조제2호)	관세율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우선 적용
2	국제협력(제73조), 편익(제74조)	3, 4, 5, 6 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
3	조정(제69조제1호, 제3호, 제4호), 할당 및 계절(제71조, 제72조)	단, 할당관세는 제4의 관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
4	일반특혜(제76조)	-
5	잠정(제50조)	-
6	기본(제50조)	-

### 특정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음

- 간이세율: 관세와 내국세 등을 합한 하나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것임.

#### ① 간이세율적용 대상물품

-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 우편물(다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
- 탁송품 또는 별송품

## ② 간이세율적용 제외물품

### • 관세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의 물품

- (1)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 (2) 수출용원재료
- (3) 관세법 제11장의 범칙행위에 관련된 물품
- (4)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
-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 가.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
  - 나. 고가품
  - 다. 당해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 라. 관세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일한 간이세율의 적용이 과세형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 (6) 화주가 수입신고를 할 때에 과세대상물품의 전부에 대하여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의 당해 물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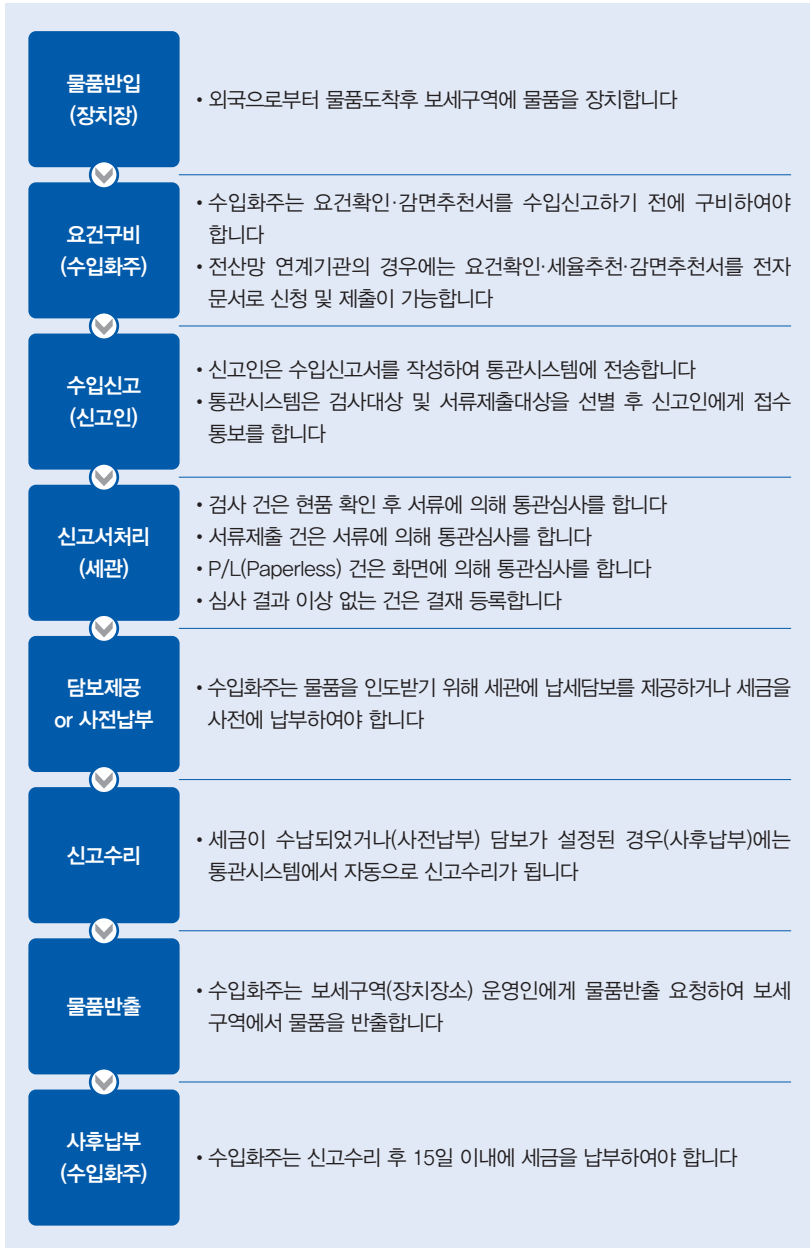
### • 합의에 의한 세율

- 일괄하여 수입신고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해서는 신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함.

### • 용도세율

- 용도에 따라 세율(기본, 잠정, 양허, 탄력 등)을 달리 정한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할 때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함.

## 수입통관 흐름도



(세부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 및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참조)

## 제2장 · 수출통관

### 수출신고시 정확한 내역을 신고해야 함

- 수출신고시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성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함.
- 사실과 다르게 수출신고하거나 수출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 관세법상 허위신고죄, 밀수출죄 또는 가격조작죄 등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음.

### 수출통관시 서류심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수출신고시 세관에서는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 및 불법수출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우범성이 없는 경우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짐.

### 수출신고는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수출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허위신고죄로 처벌될 수 있음.

### 도난·말소되지 않은 중고차, 분실·도난 스마트폰 등은 수출할 수 없음

- 중고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 등록 후 수출할 수 있음.

※ 도난 중고자동차 불법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세구역 반입 후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대상물품으로서 중고자동차를 지정 운영('17.4월)

- 중고 스마트폰을 수출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분실·도난 여부 확인 후 수출해야 함.
- 동 물품 등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분실·도난 및 말소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검사가 이루어짐.

##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30일 이내에 적재이행을 완료해야 함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 수단에 적재를 완료해야 함.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

## 수출신고시 수출제한 대상 여부인지를 확인해야 함

-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해당하는 물품 및 「대외무역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해당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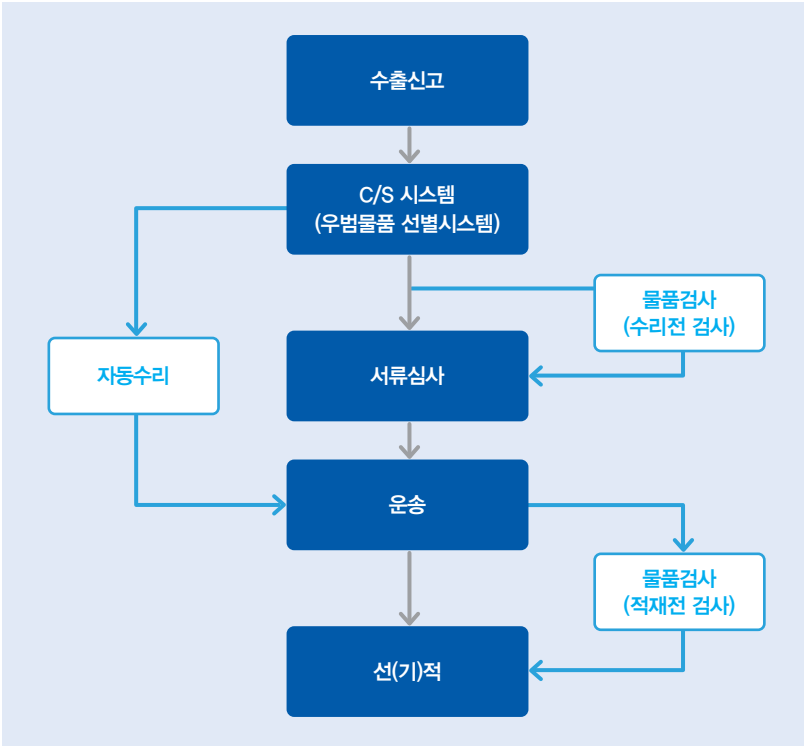
관련 법률	대상 물품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 물품
(2) 방위사업법	• 방위사업법 해당 물품
(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 물품
(4)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거래법 해당 물품
(5)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 권총·소총·기관총포, 화약·폭약 • 그 외의 총 및 그 부분품, 도검, 화공품, 분사기, 전자총격기, 석궁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야생생물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 국외반출승인대상 야생동·식물
(7)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 해당 물품
(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당 물품
(9) 원자력안전법	• 핵물질 •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10) 가축전염예방법	• 가축전염병예방법 해당 물품
(11)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해당 물품
(12)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인삼종자

## 수출 절차 및 통관 흐름도

- 수출통관이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신고수리 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함.
- 수출 절차



- 수출통관 흐름도



〈세부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 및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참조〉

## 제3장 · 특송물품 통관

### 특송물품 통관절차

- 과거 특송물품은 서류, 카탈로그, 샘플, 해외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반입하는 물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
  - 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함.
- ※ 고의적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 특송물품 통관방식

- 목록통관
  -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 전자상거래사이트 URL 등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임.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함.
  -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함.

##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 ① 의약품
- ② 한약재
- ③ 야생동물 관련 제품
- ④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 ⑤ 건강기능식품
- ⑥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 물품
- ⑦ 식품류, 주류, 담배류
- ⑧ 화장품(기능성 화장품, 태반 함유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 화장품에 한함)
- ⑨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⑩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⑪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 ⑫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 • 간이수입신고

-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 수입신고할 수 있음.
- 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함.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 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함.

### • 일반수입신고

-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 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 특송물품의 면세제도

-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됨. 다만, 담배 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됨.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됨.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 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세부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및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참조〉

## 제4장 · 우편물 통관

### 우편물의 통관절차

- 해외 친지 등이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기증하는 물품 등 일정금액(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의 물품은 관세를 면세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음.
- 이와 같이 세관직원이 현장 면세한 우편물은 수취인 주소지의 배달 우체국으로 이관되어 수취인이 자택에서 배달받게 되며, 과세대상 우편물은 수취인이 세금을 내야 통관이 가능하며, 일부 물품은 수입제한요건을 충족(검역증 등)해야 통관이 가능함.

### 우편물의 수입신고방법

- 간이수입신고
  - 일반수입신고 대상 이외의 물품은 간이수입신고대상으로서 수취인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우편물에 부착된 세관신고서의 물품 명세에 의하여 과세 및 면세 여부를 결정함.

- 면세 및 과세대상은 물품의 가격, 수량,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면세 또는 세금이 결정된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수취인의 주소지까지 배달하고, 수취인은 세금을 납부한 후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음.

- 일반수입신고

- 다음의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제한품목인 경우 품목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추천·허가·승인 등의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일반수입신고 대상물품

- ①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 ②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 ③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 ④ 물품가격 미화 1,000불 초과 물품
- ⑤ 과세가격 500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선물
- ⑥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

〈세부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및 국제우편물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참조〉

## 제5장 · 여행자 휴대품 통관

### 여행자 휴대품

-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품
-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
- 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등

## 면세범위

-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 (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
- 위 항목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 이하이고, 총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니코틴 함량 1% 미만), 향수 100ml

※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음

##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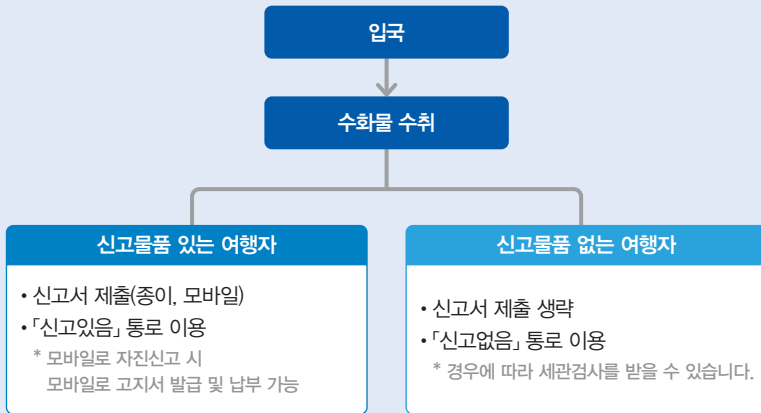
-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 경감
  -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

## 신고대상

- 면세범위 초과 물품
- 상용물품과 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 용품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부분품, 모의 또는 장식용을 포함한다),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류 및 감청 설비
- 앵속·아편·코카인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등 이들의 제품,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류
- 국헌·공안·풍속을 저해하는 서적·사진·비디오테이프·필름·LD·CD·CD-ROM 등의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사용되는 물품
- 위조·변조·모조의 화폐·지폐·은행권·채권 및 그 밖의 유가증권
- 동물(고기·가죽·털을 포함한다),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그 밖의 식품류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가공품 (호랑이·표범·코끼리·타조·매·올빼미·코브라·거북·악어·철갑상어·산호·난·선인장·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모피·상아·핸드백·지갑·악세사리 등, 웅담·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목향·구척·천마 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을 말한다)
-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이 출국시 휴대 반출신고하여 반출했다가 재반입하는 물품
- 우리나라에 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했다가 출국시 반출할 물품 (환승 후 운송인을 변경하여 도착지까지 운송하고자 하는 물품 포함)
-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6-2조 제2항 및 제6-3조 제1항에 따라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 수단 등

### 여행자 휴대품 통관 흐름도



〈세부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참조〉

## 제6장 · 이사회물 통관

### 정의

-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
-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
- “이사자”란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외국인 또는 재외 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자를 말함.

### 이사물품 인정범위

- ①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하는 경우 관세 등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② 내구성 가정용품의 경우 다음의 표에 따라 이사물품으로 인정하되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 가족수에 따른 이사물품 인정수량 ]

가족수	이사물품 인정 수량
1~2명	1개
3~4명	2개
5~8명	3개
9명 이상	4개

## 필수 과세대상물품

-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이사회가 반입하는 다음의 물품(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 반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과세하여야 함.
  1. 선박
  2. 항공기
  3. 자동차(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과 외국 국적을 가진 기차가 반입하는 경우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4.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개당 과세 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것
  5.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6. 이사물품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

## 과세가격의 결정

- ① 이사물품 또는 단기체류자 반입물품(이사물품등)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이사물품 인정범위를 초과한 과세 대상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1. 사용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신품가격의 80%
  2. 사용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신품가격의 60%
  3. 사용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신품가격의 40%
  4.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신품가격의 20%
- ② 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에 기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최초 등록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함.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가격 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그 가격을 인정할 수 있음.

## 단기체류자 반입물품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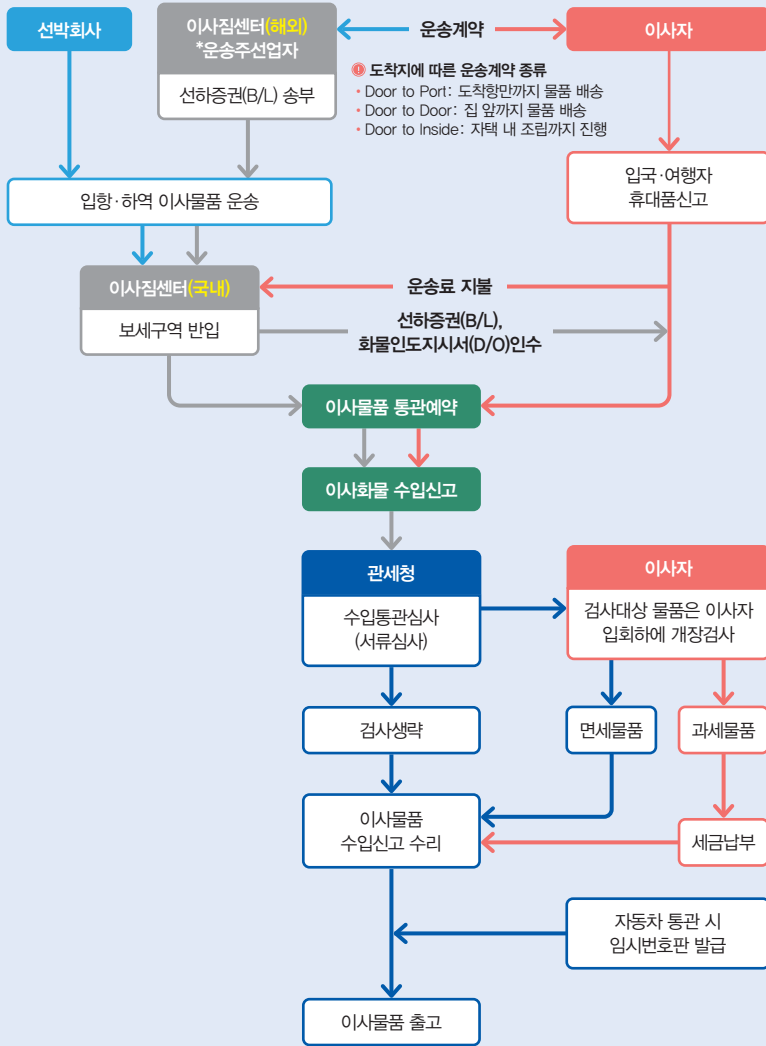
- ① 단기체류자의 거주 사유, 직업, 거주기간,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개인용품 등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함.
- ② 면세하고자 하는 때에는 단기체류자가 일정한 주거를 정하고 거주하였음을 임대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함.
- ③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 등 필수 과세대상물품은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함.

## 이사물품 통관지세관

이사물품등은 도착한 항만세관 또는 공항세관에서 통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의 세관으로 보세운송하여 통관할 수 있음.

1. 서울세관
2. 인천세관
3. 용당세관
4. 대전세관

## 해외 이사물품 통관 흐름도



〈세부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및 이사화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참조〉

# III

## 출입국 외환신고

### 제1장 · 출국시 외환신고

#### 신고요건

-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말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없음.
- ②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시 휴대하여 입국한 범위내의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출국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없으며, 해외에서 송금받거나 해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 인출, 또는 대외계정에서 인출한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확인증 지참)에도 신고가 필요없음.
- ③ 국민인 거주자가 일반해외여행경비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을 휴대 수출할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직접 가지고 출국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① 해외이주자,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및 여행업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여행경비를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와 외국인거주자가 국내근로소득을 휴대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이 경우 별도의 세관 신고는 없지만 세관의 요구가 있을시 확인증을 제시하여야 함)
- ② 물품거래대금의 지급, 자본거래대가의 지급 등은 각 거래에 정하는 신고를 하고 휴대출국할 수 있음.  
(예: 물품거래대가의 지급: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 외화등 휴대출국절차

구분		국민인 거주자	비거주자 등	
대외지급 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	모두 합하여 미화 1만불 상당 이하	자유	자유	
	미화 1만불 초과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 여행업자·해외유학생· 해외 체재자의 해외여행경비	외국환은행장의 확인 (확인증 지참)	해당사항 없음
		일반 해외여행자의 일반 해외여행경비	관할세관장에게 신고	해당사항 없음
		최근 입국시 휴대하여 입국한 범위 내의 대외지급수단	외국에서 가지고 온 것과 관계없이 용도에 따라 별도의 신고 (외국인거주자 포함)	신고 불요 (신고증 필요)
		카지노에서 획득하여 재 환전한 대외지급수단	해당사항 없음	신고 불요 (증명 필요)
		물품대금, 증권취득, 부동산구입, 해외 예금 등 기 타자금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신고 또는 자본거래 신고 (세관신고와 별개)	신고

## 제2장 · 입국시 외환신고

### 신고요건

- ① 미화 1만불 이내의 지급수단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가 필요  
없음.
- ② 약속어음, 신용장, 환어음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신고나 허가가 필요없음.
- ③ 모두 합하여 미화로 1만 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함.
- ④ 원화표시 자기앞 수표도 신고하여야 함.

## 신고절차

- ① 여행자휴대품신고서 3번 외화신고 (있음) 표시, 금액 기재 후 세관 직원에게 제출함.
- ② 현품 확인 후 반드시 외국환 신고필증 1부를 수령하여야 함.
- ③ 국내 입국 후(입국장을 나간 후)에는 외국환신고필증 발급이 불가함.

※ 미신고 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됨.

\* T1여행자통관1과 ☎032-722-4422, T2여행자통관2과 ☎032-723-5119

**특송 및 국제우편을 통한 외화 반입시에도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고 교부받은 신고필증이 있어야만 국내은행에 예금 및 환전 등이 가능**

## 제3장 · 유의사항

### 관련규정

- ① 외국환거래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31조
- ② 외국환거래규정 제6장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 벌칙

- ①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외화 등을 수출입하는 경우, 신고위반 시는 위반한 금액이 미화 3만불 이하인 경우 과태료처분(관세법 제32조)을 하고, 미화 3만불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②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벌금상한액인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적물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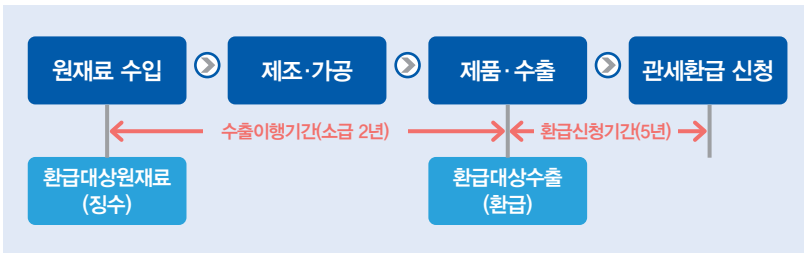
※ 지급수단 등을 휴대하고 출입국할 때 신고하는 제도는 마약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선진국인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취지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 점을 이해하시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필요로 함.

# IV

## 관세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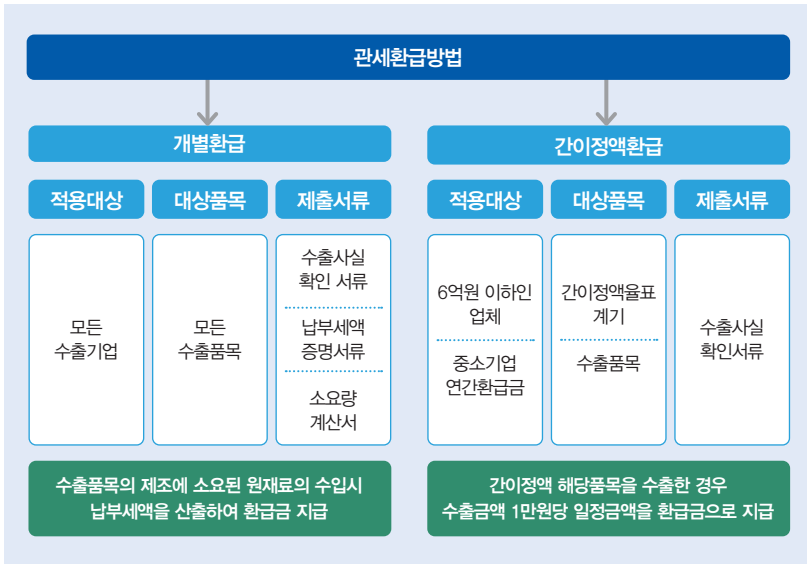
### 제1장 · 관세환급 정의

- 관세환급은 환급특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
  - 수입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줌.
- 관세환급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 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수출이행기간)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함.



### 제2장 · 관세환급 방법

- 환급방법은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개별환급과 납부세액을 증명하지 않는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



-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직전 2년간 매년도 총 환급실적(기납증 발급 실적 포함)이 8억원 이하인 제조업체
  - 환급신청(기납증 발급 신청 포함)일이 속하는 연도의 환급실적이 8억원 이하인 업체
- 간이정액환급은 원재료 수입단계의 납부 관세 등 증명과 소요량 산정을 하지 않고 환급신청
-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환급금 지급하는 것이고,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종류별 양('소요량'이라 함)을 계산하여 동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개별적으로 산출하게 되므로 환급금이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요량 계산이 복잡하다는 단점

## 제3장 · 개별환급 절차

### 원재료 수입

-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의 납부세액이 있어야 합니다.
- 국내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수입세액 분할증명서, 평균 세액증명서 등으로 납부세액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수출물품 제조

- 수입원재료가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어야 합니다.
-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과 수출물품의 포장용품도 환급대상 원재료에 포함됩니다.

### 소요량 산정

- 수출물품 생산에 들어간 소요량은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6가지 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임의 선택하여 산정합니다.

### 환급신청

-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환급 신청하여야 합니다.

### 환급금 지급

- 신청한 환급금은 기재사항과 제출서류의 구비여부만을 확인하고 환급신청인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 사후 심사

- 부정환급으로 처벌받은 경우 또는 과다환급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환급금 지급후 환급금의 정확여부를 심사합니다.

〈세부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참조〉

# V

## 보세공장 제도

### 제1장 · 보세공장 개요

- 보세공장은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특허보세구역을 말함.
- 외국 원재료를 과세보류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가공무역 활성화에 기여함.

### 제2장 · 설치·운영의 특허

#### 특허대상

- ①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수출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수리·조립·분해·검사(원재료 품질검사 등을 포함한다)·포장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
- ②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공장으로 관세법 제185조 제5항에 따라 제한되지 않는 업종

#### 특허의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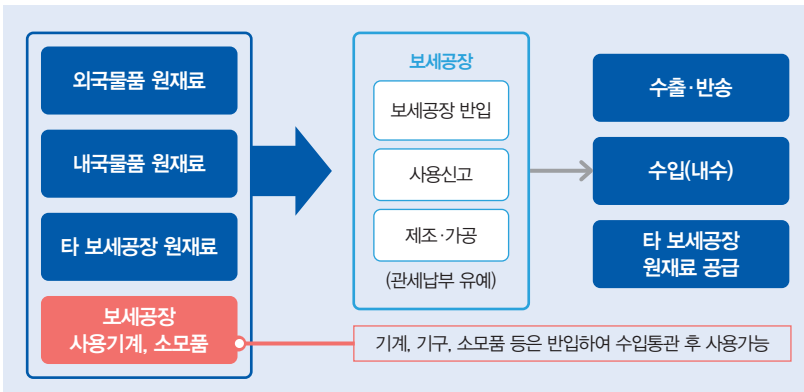
-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공장의 설치·운영 특허를 할 수 없음.
  1. 관세법 제175조 운영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2.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
  3. 위험물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작업의 종류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설치·운영특허를 제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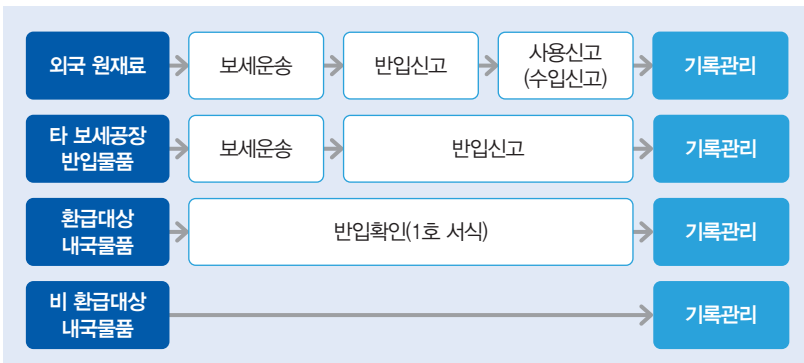
1. 보수작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폐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3. 손모율이 불안정한 농·수·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4. 보세작업의 전부를 장외작업에 의존할 경우

## 제3장 · 반출입 절차 등

### 보세공장 업무 흐름도



### 반입원재료별 사용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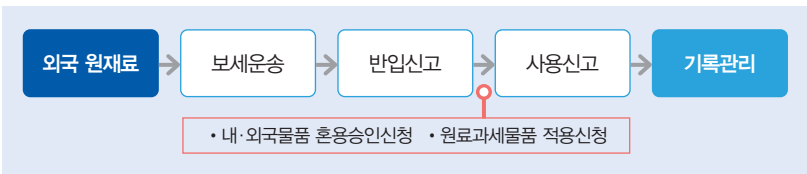


## 물품반출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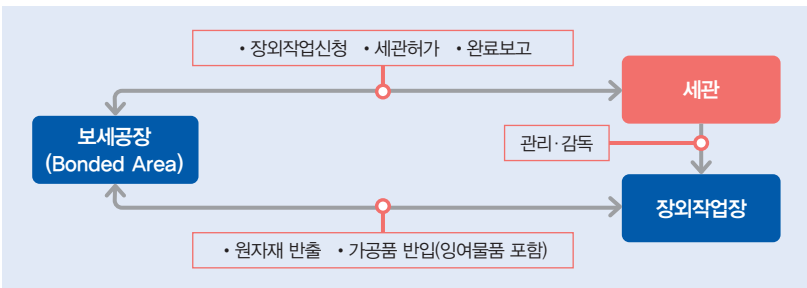
## 과세 적용 시기

- 내·외국물품 혼용작업 신청 또는 원료과세 적용 신청은 원재료의 '사용신고' 전에 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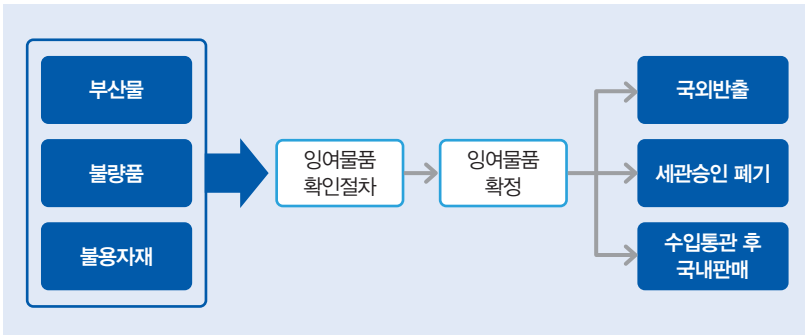
## 장외작업 절차

-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세공장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작업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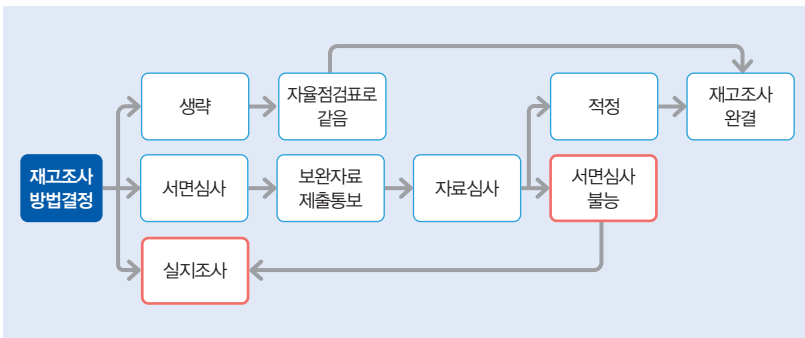
## 잉여물품 처리절차

- 보세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잉여물품은 '잉여물품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할 수 있고, 폐기 후 잔존물이 실질적인 가치가 있을 때에는 폐기 후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관세 등을 징수함.



## 소요량 관리 및 재고조사

- 운영인은 생산제품에 대한 '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를 작성·보관해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3개월이 지난 15일 이내에 재고관리 현황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자율점검표'를 세관장에게 제출
- 세관장은 제출받은 자율점검표를 심사하여 재고조사 생략, 서면조사 또는 실지조사 여부를 결정



〈세부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및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참조〉

## 제1장 · FTA 개요

### 정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을 말함. FTA는 그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 무역(NAFTA)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 부르기도 함.

### 주요내용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간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었으나, WTO체제 출범을 전후하여 상품에 대한 무역철폐 외에 서비스, 투자자유화,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구제제도 등 협정의 대상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확산이유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은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 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음. 이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를 크게 다음과 같이 들 수 있음.

1. WTO 다자협상의 경우 장시간이 소요되고, 회원국 수의 급증으로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 점에 대한 반작용
2.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분의 중요한 개혁 조치로 부상

3. 무역 및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인식 확산과 FTA 체결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가 교훈으로 작용
4. 특정국가 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 고려
5.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

## 제2장 · FTA 체결현황

### 발효된 FTA(21건, 59국)

※ 2023년 1월 기준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협상 개시	서명	발효	
 칠레	1999.12	2003.02	2004.04	최소의 FTA,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싱가포르	2004.01	2005.08	2006.03	ASEAN 시장 교두보
 EFTA(4개국)	2005.01	2005.12	2006.09	유럽시장 교두보
 ASEAN (10개국)	2005.02	2006.08 (상품무역협정)	2007.06 (상품무역협정)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
		2007.11 (서비스협정)	2009.05 (서비스협정)	
		2009.06 (투자협정)	2009.09 (투자협정)	
 인도	2006.03	2009.08	2010.01	BRICs 국가, 거대시장
 EU(27개국)	2007.05	2010.10.06	2011.07.01 (잠정)	거대 선진경제권
			2015.12.13 (전체) <small>*2011.07.01 이래 만 4년 5개월 간 잠정적용</small>	
 페루	2009.03	2011.03.21	2011.08.01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미국	2006.06	2007.06	2012.03.15	세계 최대경제권 (GDP 기준)
	2018.01 (개정협상)	2018.09.24 (개정협상)	2019.01.01 (개정의 정식)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협상 개시	서명	발효	
 튀르키예	2010.04	2012.08.01 (기본협정· 상품무역협정)	2013.05.01 (기본협정· 상품무역협정)	유럽·중앙아시아 진출 교두보
		2015.05.26 (서비스· 투자협정)	2018.08.01 (서비스· 투자협정)	
 호주	2009.05	2014.04.08	2014.12.12	자원부국,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캐나다	2005.07	2014.09.22	2015.01.01	북미 선진시장
 중국	2012.05	2015.06.01	2015.12.20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19년 기준)
 뉴질랜드	2009.06	2015.03.23	2015.12.20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베트남	2012.08	2015.05.05	2015.12.20	우리의 제5위 투자대상국('19년 기준)
 콜롬비아	2009.12	2013.02.21	2016.07.15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중미(5개국)	2015.06	2018.02.21	2021.03.01 전체발효	중미 신시장 창출
 영국	2017.02	2019.08.22	2021.01.01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 지속
 RCEP	2012.11	2020.11.25	2022.02.01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여
 이스라엘	2016.05	2021.05.12	2022.12.01	창업국가 성장모델
 캄보디아	2020.07	2021.10.26	2022.12.01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인도네시아	2019.02	2020.12.18	2023.01.01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확대 기여

- EFTA(유럽자유무역연합)(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ASEAN(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 EU(27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 중미(5개국):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한국제외 14개국): 한국, 아세안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 서명/타결된 FTA(2건, 2국)

※ 2023년 11월 기준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협상 개시	진행 현황	
 필리핀	2019.06	협상 개시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기여
	2019.06~2020.01	5차례 협상 개최	
	2021.10.26	타결	
 에콰도르	2015.08	협상 개시	자원부국, 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
	2016.01~2023.04	9차례 협상 개최	
	2023.10.11.	타결	

## 협상중인 FTA(9건)

※ 2023년 11월 기준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협상 개시		
 한중일	2012.11.20.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 마련
	2013.03~2019.11		
 MERCOSUR (4개국)	2018.05		남미 최대시장
	2018.09~2021.08		
 러시아	2019.06		신북방 정책추진, 거대신흥시장
	2019.06~2020.07		
 말레이시아	2019.06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기여
	2019.07~2019.09		
 한-아세안 추가 자유화	2010.10~2021.07		교역확대, 통상환경 변화 반영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2016.10~2019.06		주력 수출품목양허·원산지기준 개선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협상 개시	
 한-칠레 FTA 업그레이드	2018.11~2021.10	통상환경 변화 반영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2018.03~2020.10	우리의 제1위 서비스 수출국
 우주베키스탄 STEP	2021.01	중앙아시아 최대시장
	2021.04~11	

- 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베네수엘라는 협상제외)

## 협상재개·여건조성 FTA(2건)

※ 2022년 2월 기준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협상 개시	
 PA(4개국)	2018.05	중남미 신흥시장
	2019.09	
 EAEU (5개국)	2016.10~2017.04	신북방정책 교두보 확보
	2017.09	

- PA(Pacific Alliance):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 EAEU(Eurasian Economic Union):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 제3장 · 원산지결정기준

### 원산지결정기준의 종류

		완전생산기준			
		일반적 기준	실질적 변형기준	단독 기준	세번변경기준
4단위 세번변경(CTH)					
6단위 세번변경(CTSH)					
부가가치기준	부가가치율(RVC)			직접법(BU)	
		공제법(BD)			
순원가법(NC)					
비원산지재료가치비율(MC)					
특정공정기준	재단, 봉제, 날염, 염색 등				
일반적 기준	실질적 변형기준	선택 기준	or 조건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번변경기준 or 부가가치기준</li> <li>세번변경기준 or (세번변경기준 and 부가가치기준)</li> <li>(세번변경기준 and 특정공정기준) or 부가가치기준</li> <li>부가가치기준 or 특정공정기준</li> <li>세번변경기준 or (부가가치기준 and 특정공정기준)</li> </ul>		
			and 조건 예시		
일반적 기준	실질적 변형기준	조합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번변경기준 and 부가가치기준</li> <li>세번변경기준 and 특정공정기준</li> </ul>		
			보충적 기준		
			미소기준(De minimis)		
일반적 기준	실질적 변형기준	누적기준	재료누적		
			상품누적		
			공정누적		
		중간재			
		간접재료	공구, 금형, 설비, 연료, 촉매제 등		
		재료가격	원산지재료의 가격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공구, 부속품			
		용기, 포장			
		대체기능물품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불인정공정(총부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					
역외가공					

## 제4장 · 원산지증명서 발급

### 원산지증명서 의의

- ①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
- ②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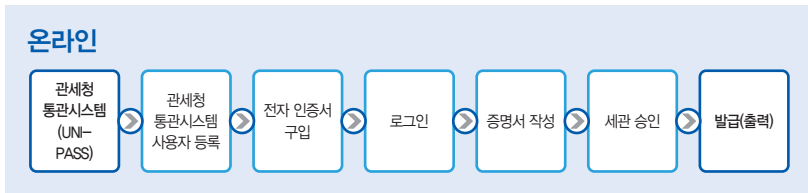
### 국내 원산지증명 절차

#### ① 자율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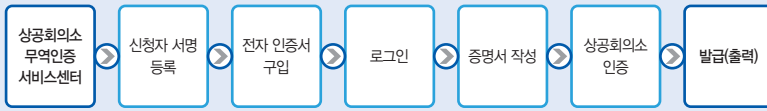
#### ② 기관발급

– 세관 발급



– 대한상공회의소 발급

**온라인**



**오프라인(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제출 후 발급

## 제5장 · 인증수출자 제도

###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한-EU FTA, 한-영 FTA 등)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인증수출자의 종류 및 인증 기간

구분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혜택범위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
인증유효기간	5년	5년
인증기간	본부세관(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및 평택 직할세관	
인증기준	협정상대국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 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

협정	인증 前	인증 後
한-EU 한-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하여만</li> <li>- 원산지신고서 작성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000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li> </ul>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한-중국 한-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작성 (전산으로 신청)</li> <li>• 첨부서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신고필증 사본</li> <li>- 원산지소명서</li> <li>-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경우)</li> <li>- 그 밖의 원산지 증빙자료</li> </ul> </li> <li>• 현지확인(필요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전산으로 신청)</li> <li>• 첨부서류 제출 생략</li> <li>• 현지확인 생략 가능</li> </ul>
한-E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 (통상 Invoice 신고시) 수출자의 서명 필요 (전자문서 이용 불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 (통상 Invoice 신고시) 수출자의 서명 생략 (전자문서 이용 가능)</li> </ul>
RCEP* 한-캄보디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권한 부여</li> <li>•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li> </ul>
한-이스라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하여만</li> <li>- 원산지신고서 작성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화 1천달러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자율증명 방식 활용 가능</li> <li>•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li> </ul>
기타	동 제도 미 적용	

\*인증수출자 운영 현황(한국, 중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태국) '22.1.31. 기준

## 제6장 · 원산지확인서

### 원산지(포괄)확인서란?

- ①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
- ②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 등은 원산지확인서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 가능한 원산지 포괄확인서를 사용

### 필요성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료 및 최종제품에 대한 원산지확인 절차를 마련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 입증부담을 경감하고 원산지증명 절차를 신속히 하기 위함

### 작성주체

수출업체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나 부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업체가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해당 재료가 국내산인지 역외산인지 판단하여 관련 서식에 의거 작성

### 유통경로

- ① 수출자는 공급받은 재료 또는 최종 물품의 원산지 생산자에게 원산지(포괄)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게 되고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바탕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함.
- ② 요청받은 생산자는 해당 FTA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 후 원산지 (포괄)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 제7장 · 원산지검증

### 원산지검증 의의

- ① (협약)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요건(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빙 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시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
- ② (광의) 원산지요건 이외에 관련 협정 및 국내법에서 정한 모든 특혜 요건 (거래당사자, 세율, 운송경로, 신청절차 등) 또는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 ③ 특혜 적용받은 협정관세의 적정여부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국내 수입자·수출자·생산자 및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계약상대국 수출자·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조사

### 원산지검증 목적

- ① 불공정 무역행위의 방지
- ② 제3국 물품의 우회수출입 방지를 통한 국내산업 보호
- ③ 관세탈루 방지를 통한 세수증대
- ④ 협정국간 교역과 투자촉진
- ⑤ 상대국의 검증요청 수행을 통한 FTA 이행관리

### 원산지검증 방법

- ① 수출검증과 수입검증으로 구분·실시하고 각 FTA 별로 상이한 원산지검증 방식 적용
- ② 검증주체별 유형
  1. 직접검증(미주형): 수입국 세관이 해외수출자를 대상으로 직접검증
  2. 간접검증(유럽형): 수출국 세관이 수입국의 요청을 받아 자국 수출자를 대상으로 검증하며 수입국 세관의 참관 가능
  3. 직접검증과 간접검증의 혼합(아시아형)

(세부 내용은 관세청 FTA 포털([www.customs.go.kr/ftaportalkor](http://www.customs.go.kr/ftaportalkor)) 참조)

# VII

## 관세종합상담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관세행정에 대한 모든 분야(수출입 통관, FTA, 품목 분류, 평가·감면, 특송물품·휴대품 통관, 보세화물, 환급 등)에 걸쳐 'one-call, total service'를 제공하고 있음.

#### 전화 상담

- ①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25번(해외: 82-2-3438-5199)으로 전화
- ② 10번(밀수제보 및 밀수 관련 상담), 20번(관세법령 및 기타상담 문의), 30번(관세공무원 비리신고), 40번(채납자 은닉재산 신고)을 누르면 상담원과 연결
- ③ 평일 9시에서 18시까지 가능하며(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 야간이나 휴일에는 전화번호를 남겨 주시면 업무개시 후 상담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상담해 드림

#### 인터넷 상담

- ①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call/main.do>)에 접속하여 인터넷 상담 코너에서 상담 등록
- ② 인터넷 상담 코너의 '전체 상담', 또는 핫이슈 상담사례 코너에서 유사 상담 사례 조회 가능

#### 방문 상담

전화예약(☎02-3438-5113) 후 고객지원센터(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2동 706호)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음.

###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의 FTA 활용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FTA 관련 6개 정부부처와 9개 지원기관이 모여 민관합동으로 운영하고 있음 (FTA 콜센터 1380).



KOTRA자료 25-004

## 2025 외국투자자를 위한 통관가이드

발행일	2025년 1월
발행인	강경성
발행처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디자인/편집	(주)레드코블소커뮤니케이션
주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06792)
전화	1600-7119(대표)
홈페이지	<a href="http://www.kotra.or.kr">www.kotra.or.kr</a>
ISSN	3058-8448 / 3022-5035(e-ISSN)

Copyright ©2025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20  
25

